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등기번호	685569			
등록번호	110111-6855691			
상 호	주식회사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			
본 점	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, 6층(개포동, 서울강남우체국빌딩)			
공고방법	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한국경제에 게재한다.			
1주의 금액	금 5,000 원			

발행할 주식의 총수 50,000,000 주	
80,000,000 주	2018.12.27 변경 2018.12.31 등기

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	자본금의 액	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
발행주식의 총수 60,000 주		
보통주식 60,000 주	금 300,000,000 원	
발행주식의 총수 26,260,000 주		2018.12.29 변경
보통주식 60,000 주		2018.12.31 등기
에이종우선주식 26,200,000 주	금 131,300,000,000 원	

목 적

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(이하'부투법' 이라 한다.)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.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그 자산의 투자.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.

1. 부동산의 취득,관리,개량 및 처분
1. 주택건설사업
1. 부동산의 개발사업
1. 부동산의 임대차
1. 증권의 매매
1. 금융기관에의 예치
1. 지상권.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.관리.처분
1.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.관리.처분

임원에 관한 사항			
사내이사 김인권 640204-*****		2018년 11월 15일 사임	2018년 11월 19일 등기
기타비상무이사 조상현 661206-*****		2018년 11월 15일 사임	2018년 11월 19일 등기

등기번호	685569
기타비상무이사 조철화 670110-*****	2018년 11월 15일 사임 2018년 11월 19일 등기
감사 임세광 660415-*****	2018년 11월 15일 사임 2018년 11월 19일 등기
대표이사 김인권 640204-*****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80번길 31, 202(초이동)	2018년 11월 15일 사임 2018년 11월 19일 등기
감독이사 임세광 660415-*****	2018년 11월 15일 취임 2018년 11월 19일 등기
감독이사 심태용 780817-*****	2018년 11월 15일 취임 2018년 11월 19일 등기
법인이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1101116*****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, 6층(개포동, 서울강남우체국빌딩)	2018년 11월 15일 취임 2018년 11월 19일 등기

종류주식의 내용

에이종우선주식

①회사는 삼천만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이종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, 에이종 우선주식은 누적적, 참가적이고, 의결권이 있다. 회사는 에이종 우선주식을 발행할 때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배당률(이하 “우선배당률”)을 정하되, 우선배당률은 에이종 우선주식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2.5%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.

②회사는 매 결산기에 우선배당률로 해당 결산기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에이종 우선주식에 배당하고, 그 후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 발행가액의 연 10%의 비율로 해당 결산기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 보통주식에 배당한다. 이와 같이 배당하고 남은 이익이 있는 경우 에이종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에 그 주식 수 비율에 맞게 안분 배당한다.

③어느 사업연도의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분(이하 “누적 미배당분”이라 한다)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시에 우선적으로 배당하되,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한 누적 미배당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이 다 이루어진 후 남은 이익을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.

④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.

1. 최우선으로,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금액(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.

2. 전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,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금액에 우선 배당률과 같은 비율을 연 복리로 보유기간 동안 계산하여 산출되는 수익에서, 청산 전에 에이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된 이익배당액 합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.

3. 전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,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금액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.

4. 전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,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금액에 10%의 비율을 연 복리로 보유기간 동안 계산하여 산출되는 수익에서, 청산 전에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된 이익배당액 합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.

5. 전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에이종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에 그 주식

등기번호	685569
------	--------

수 비율에 맞게 안분 배분한다.
 2018 년 12 월 27 일 변경 2018 년 12 월 31 일 등기

기 타 사 항

1.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
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.
 1.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
 2. 주주총회의 해산결의
 3. 합병
 4. 파산
 5.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
 6.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의 취소
 7.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가 거부된 경우
 8.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

회사성립연월일 2018 년 08 월 28 일

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
 설립 2018 년 08 월 28 일 등기

수수료 700원 영수함 --- 이 하 여 백 ---
 관할등기소 :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/ 발행등기소 :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